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방문예약제 운영안내**

■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www.elife.co.kr)를 견본주택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감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 할 예정입니다.(기본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예정)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동반 1인 포함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 추가 입장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2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밀양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4.) 현재 경상남도 및 밀양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포함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밀양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제25조 제8항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 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밀양시)은「주택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써「주택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총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공고일 이후 추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등의 민원을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밀양시)은「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주택법」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1항[별표3] 규정에의거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1순위 자격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따라 특별공급 신혼부부 공급비율이 기존 10% → 20%(민영주택 기준)로 확대, 혼인기간은 5년이내 → 7년 이내로 확대되었고,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하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 출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전 제출하는 서류 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최초계약자의 공급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주체와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매수자(전매자)와의 계약도 취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전매자 포함)는 어떠한 사유(선의의 피해 등)로도 사업주체나 해당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19.1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0. 08. 04. (화)	2020. 08. 05. (수)	2020. 08. 06. (목)	2020. 08. 12. (수)	2020. 08. 25. (화) ~ 2020. 08. 27. (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밀양시 건축과-28507호('20.07.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3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9,105m²(기부채납 : 3,983m², 사업부지 면적 : 25,122m²)
■ 공급규모 : 지하1층, 지상29층 총 아파트 5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특별공급 : 5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11월 입주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저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		계	특별공급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기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20000892-1	066.9780A	66A	66.9780	23.3880	90.3660	31.0000	121.3660	36.7460	141	14	14	28	4	81	5
	2020000892-2	066.9875B	66B	66.9875	25.3226	92.3101	31.0044	123.3145	36.7512	28	3	3	6	1	15	1
	2020000892-3	066.8071C	66C	66.8071	24.1067	90.9138	30.9209	121.8347	36.6522	28	3	3	6	1	15	1
	2020000892-4	084.9366A	84A	84.9366	27.6250	112.5616	39.3120	151.8736	46.5985	196	19	20	38	6	113	8
	2020000892-5	084.9659B	84B	84.9659	28.7117	113.6776	39.3255	153.0031	46.6146	56	5	5	11	1	34	2
	2020000892-6	084.8119C	84C	84.8119	27.0915	111.9034	39.2542	151.1576	46.5301	53	6	5	11	1	30	2
	2020000892-7	110.3883A	110A	110.3883	27.3700	137.7583	51.0920	188.8503	60.5620	29	-	3	-	1	25	1
	2020000892-8	110.4942B	110B	110.4942	29.0138	139.5080	51.1410	190.6490	60.6201	29	-	3	-	1	25	1
계										560	50	56	100	16	338	21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66.9780A	66.9875B	66.8071C	84.9366A	84.9659B	84.8119C	110.3883A	110.4942B
약식표기	66A	66B	66C	84A	84B	84C	110A	110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록/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타입)	동별 (라인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계약시	'20.11.15.	'21.03.15.	'21.07.15.	'21.10.15.	'22.02.15.	'22.06.15.	
66A	101동(3,4호) 102동(3호)	1층	1	32,644,000	198,125,000	-	230,769,000	23,076,900	23,076,900	23,076,900	23,076,900	23,076,900	23,076,900	23,076,900	69,230,700
		2층	3	32,995,000	200,250,000	-	233,245,000	23,324,500	23,324,500	23,324,500	23,324,500	23,324,500	23,324,500	23,324,500	69,973,500
		3층	3	33,695,000	204,501,000	-	238,196,000	23,819,600	23,819,600	23,819,600	23,819,600	23,819,600	23,819,600	23,819,600	71,458,800
		4층	3	34,395,000	208,753,000	-	243,148,000	24,314,800	24,314,800	24,314,800	24,314,800	24,314,800	24,314,800	24,314,800	72,944,400
		5층	3	34,746,000	210,878,000	-	245,624,000	24,562,400	24,562,400	24,562,400	24,562,400	24,562,400	24,562,400	24,562,400	73,687,200
		6층~9층	12	35,096,000	213,003,000	-	248,099,000	24,809,900	24,809,900	24,809,900	24,809,900	24,809,900	24,809,900	24,809,900	74,429,700
		10층~14층	15	35,446,000	215,129,000	-	250,575,000	25,057,500	25,057,500	25,057,500	25,057,500	25,057,500	25,057,500	25,057,500	75,172,500
		15층 이상	45	35,831,000	217,467,000	-	253,298,000	25,329,800	25,329,800	25,329,800	25,329,800	25,329,800	25,329,800	25,329,800	75,989,400
	102동(1호) 103동(2호)	2층	2	32,146,000	195,099,000	-	227,245,000	22,724,500	22,724,500	22,724,500	22,724,500	22,724,500	22,724,500	22,724,500	68,173,500
		3층	2	32,846,000	199,350,000	-	232,196,000	23,219,600	23,219,600	23,219,600	23,219,600	23,219,600	23,219,600	23,219,600	69,658,800
		4층	2	33,547,000	203,601,000	-	237,148,000	23,714,800	23,714,800	23,714,800	23,714,800	23,714,800	23,714,800	23,714,800	71,144,400
		5층	2	33,897,000	205,727,000	-	239,624,000	23,962,400	23,962,400	23,962,400	23,962,400	23,962,400	23,962,400	23,962,400	71,887,200
		6층~9층	8	34,247,000	207,852,000	-	242,099,000	24,209,900	24,209,900	24,209,900	24,209,900	24,209,900	24,209,900	24,209,900	72,629,700
		10층~14층	10	34,597,000	209,978,000	-	244,575,000	24,457,500	24,457,500	24,457,500	24,457,500	24,457,500	24,457,500	24,457,500	73,372,500
		15층 이상	30	34,983,000	212,315,000	-	247,298,000	24,729,800	24,729,800	24,729,800	24,729,800	24,729,800	24,729,800	24,729,800	74,189,400
66B	102동(2호)	2층	1	32,523,000	197,391,000	-	229,914,000	22,991,400	22,991,400	22,991,400	22,991,400	22,991,400	22,991,400	22,991,400	68,974,200
		3층	1	33,223,000	201,635,000	-	234,858,000	23,485,800	23,485,800	23,485,800	23,485,800	23,485,800	23,485,800	23,485,800	70,457,400
		4층	1	33,922,000	205,880,000	-	239,802,000	23,980,200	23,980,200	23,980,200	23,980,200	23,980,200	23,980,200	23,980,200	71,940,600
		5층	1	34,272,000	208,003,000	-	242,275,000	24,227,500	24,227,500	24,227,500	24,227,500	24,227,500	24,227,500	24,227,500	72,682,500
		6층~9층	4	34,622,000	210,125,000	-	244,747,000	24,474,700	24,474,700	24,474,700	24,474,700	24,474,700	24,474,700	24,474,700	73,424,100
		10층~14층	5	34,971,000	212,248,000	-	247,219,000	24,721,900	24,721,900	24,721,900	24,721,900	24,721,900	24,721,900	24,721,900	74,165,700
		15층 이상	15	35,356,000	214,582,000	-	249,938,000	24,993,800	24,993,800	24,993,800	24,993,800	24,993,800	24,993,800	24,993,800	74,981,400
66C	103동(1호)	2층	1	31,890,000	193,544,000	-	225,434,000	22,543,400	22,543,400	22,543,400	22,543,400	22,543,400	22,543,400	22,543,400	67,630,200
		3층	1	32,575,000	197,707,000	-	230,282,000	23,028,200	23,028,200	23,028,200	23,028,200	23,028,200	23,028,200	23,028,200	69,084,600
		4층	1	33,261,000	201,869,000	-	235,130,000	23,513,000	23,513,000	23,513,000	23,513,000	23,513,000	23,513,000	23,513,000	70,539,000
		5층	1	33,604,000	203,950,000	-	237,554,000	23,755,400	23,755,400	23,755,400	23,755,400	23,755,400	23,755,400	23,755,400	71,266,200
		6층~9층	4	33,947,000	206,031,000	-	239,978,000	23,997,800	23,997,800	23,997,800	23,997,800	23,997,800	23,997,800	23,997,800	71,993,400
		10층~14층	5	34,290,000	208,112,000	-	242,402,000	24,240,200	24,240,200	24,240,200	24,240,200	24,240,200	24,240,200	24,240,200	72,720,600
		15층 이상	15	34,667,000	210,401,000	-	245,068,000	24,506,800	24,506,800	24,506,800	24,506,800	24,506,800	24,506,800	24,506,800	73,520,400
84A	101동(1호) 102동(4호) 103동(3,5호) 104동(3,4호)	1층	2	38,349,000	232,749,000	-	271,098,000	27,109,800	27,109,800	27,109,800	27,109,800	27,109,800	27,109,800	27,109,800	81,329,400
		2층	6	38,758,000	235,232,000	-	273,990,000	27,399,000	27,399,000	27,399,000	27,399,000	27,399,000	27,399,000	27,399,000	82,197,000
		3층	6	39,577,000	240,198,000	-	279,775,000	27,977,500	27,977,500	27,977,500	27,977,500	27,977,500	27,977,500	27,977,500	83,932,500
		4층	6	40,395,000	245,165,000	-	285,560,000	28,556,000	28,556,000	28,556,000	28,556,000	28,556,000	28,556,000	28,556,000	85,668,000
		5층	6	40,804,000	247,648,000	-	288,452,000	28,845,200	28,845,200	28,845,200	28,845,200	28,845,200	28,845,200	28,845,200	86,535,600
		6층~9층	24	41,213,000	250,132,000	-	291,345,000	29,134,500	29,134,500	29,134,500	29,134,500	29,134,500	29,134,500	29,134,500	87,403,500
		10층~14층	30	41,622,000	252,615,000	-	294,237,000	29,423,700	29,423,700	29,423,700	29,423,700	29,423,700	29,423,700	29,423,700	88,271,100
		15층 이상	71	42,073,000	255,346,000	-	297,419,000	29,741,900	29,741,900	29,741,900	29,741,900	29,741,900	29,741,900	29,741,900	89,225,700
	104동(1,2호)	2층	2	37,344,000	226,646,000	-	263,990,000	26,399,000	26,399,000	26,399,000	26,399,000	26,399,000	26,399,000	26,399,000	79,197,000
		3층	2	38,162,000	231,613,000	-	269,775,000	26,977,500	26,977,500	26,977,500	26,977,500	26,977,500	26,977,500	26,977,500	80,932,500
		4층	2	38,980,000	236,580,000	-	275,560,000	27,556,000	27,556,000	27,556,000	27,556,000	27,556,000	27,556,000	27,556,000	82,668,000
		5층	2	39,390,000	239,062,000	-	278,452,000	27,845,200	27,845,200	27,845,200	27,845,200	27,845,200	27,845,200	27,845,200	83,535,600
		6층~9층	8	39,799,000	241,546,000	-	281,345,000	28,134,500	28,134,500	28,134,500	28,134,500	28,134,500	28,134,500	28,134,500	84,403,500
		10층~14층	10	40,208,000	244,029,000	-	284,237,000	28,423,700	28,423,700	28,423,700	28,423,700	28,423,700	28,423,700	28,423,700	85,271,100
		15층 이상	19	40,658,000	246,761,000	-	287,419,000	28,741,900	28,741,900	28,741,900	28,741,900	28,741,900	28,741,900	28,741,900	86,225,700

84B	101동(2호) 103동(4호)	2층	2	37,972,000	230,459,000	-	268,431,000	26,843,100	26,843,100	26,843,100	26,843,100	26,843,100	26,843,100	26,843,100	80,529,300
		3층	2	38,788,000	235,415,000	-	274,203,000	27,420,300	27,420,300	27,420,300	27,420,300	27,420,300	27,420,300	27,420,300	82,260,900
		4층	2	39,605,000	240,371,000	-	279,976,000	27,997,600	27,997,600	27,997,600	27,997,600	27,997,600	27,997,600	27,997,600	83,992,800
		5층	2	40,013,000	242,849,000	-	282,862,000	28,286,200	28,286,200	28,286,200	28,286,200	28,286,200	28,286,200	28,286,200	84,858,600
		6층~9층	8	40,422,000	245,327,000	-	285,749,000	28,574,900	28,574,900	28,574,900	28,574,900	28,574,900	28,574,900	28,574,900	85,724,700
		10층~14층	10	40,830,000	247,805,000	-	288,635,000	28,863,500	28,863,500	28,863,500	28,863,500	28,863,500	28,863,500	28,863,500	86,590,500
		15층 이상	30	41,279,000	250,531,000	-	291,810,000	29,181,000	29,181,000	29,181,000	29,181,000	29,181,000	29,181,000	29,181,000	87,543,000
84C	102동(5호) 103동(6호)	1층	2	37,201,000	225,778,000	-	262,979,000	26,297,900	26,297,900	26,297,900	26,297,900	26,297,900	26,297,900	26,297,900	78,893,700
		2층	2	37,605,000	228,233,000	-	265,838,000	26,583,800	26,583,800	26,583,800	26,583,800	26,583,800	26,583,800	26,583,800	79,751,400
		3층	2	38,414,000	233,141,000	-	271,555,000	27,155,500	27,155,500	27,155,500	27,155,500	27,155,500	27,155,500	27,155,500	81,466,500
		4층	2	39,223,000	238,049,000	-	277,272,000	27,727,200	27,727,200	27,727,200	27,727,200	27,727,200	27,727,200	27,727,200	83,181,600
		5층	2	39,627,000	240,503,000	-	280,130,000	28,013,000	28,013,000	28,013,000	28,013,000	28,013,000	28,013,000	28,013,000	84,039,000
		6층~9층	8	40,031,000	242,958,000	-	282,989,000	28,298,900	28,298,900	28,298,900	28,298,900	28,298,900	28,298,900	28,298,900	84,896,700
		10층~14층	10	40,436,000	245,411,000	-	285,847,000	28,584,700	28,584,700	28,584,700	28,584,700	28,584,700	28,584,700	28,584,700	85,754,100
		15층 이상	25	40,880,000	248,111,000	-	288,991,000	28,899,100	28,899,100	28,899,100	28,899,100	28,899,100	28,899,100	28,899,100	86,697,300
110A	101동(5호)	1층	1	48,795,950	296,152,770	29,615,280	374,564,000	37,456,400	37,456,400	37,456,400	37,456,400	37,456,400	37,456,400	37,456,400	112,369,200
		2층	1	49,326,430	299,372,340	29,937,230	378,636,000	37,863,600	37,863,600	37,863,600	37,863,600	37,863,600	37,863,600	37,863,600	113,590,800
		3층	1	50,387,100	305,809,900	30,581,000	386,778,000	38,677,800	38,677,800	38,677,800	38,677,800	38,677,800	38,677,800	38,677,800	116,033,400
		4층	1	51,447,940	312,248,240	31,224,820	394,921,000	39,492,100	39,492,100	39,492,100	39,492,100	39,492,100	39,492,100	39,492,100	118,476,300
		5층	1	51,978,300	315,467,000	31,546,700	398,992,000	39,899,200	39,899,200	39,899,200	39,899,200	39,899,200	39,899,200	39,899,200	119,697,600
		6층~9층	4	52,508,760	318,686,580	31,868,660	403,064,000	40,306,400	40,306,400	40,306,400	40,306,400	40,306,400	40,306,400	40,306,400	120,919,200
		10층~14층	5	53,039,100	321,905,400	32,190,500	407,135,000	40,713,500	40,713,500	40,713,500	40,713,500	40,713,500	40,713,500	40,713,500	122,140,500
		15층 이상	15	53,622,500	325,445,900	32,544,600	411,613,000	41,161,300	41,161,300	41,161,300	41,161,300	41,161,300	41,161,300	41,161,300	123,483,900
110B	101동(6호)	1층	1	48,584,100	294,867,200	29,486,700	372,938,000	37,293,800	37,293,800	37,293,800	37,293,800	37,293,800	37,293,800	37,293,800	111,881,400
		2층	1	49,112,100	298,071,700	29,807,200	376,991,000	37,699,100	37,699,100	37,699,100	37,699,100	37,699,100	37,699,100	37,699,100	113,097,300
		3층	1	50,168,400	304,482,400	30,448,200	385,099,000	38,509,900	38,509,900	38,509,900	38,509,900	38,509,900	38,509,900	38,509,900	115,529,700
		4층	1	51,224,500	310,892,300	31,089,200	393,206,000	39,320,600	39,320,600	39,320,600	39,320,600	39,320,600	39,320,600	39,320,600	117,961,800
		5층	1	51,752,650	314,097,590	31,409,760	397,260,000	39,726,000	39,726,000	39,726,000	39,726,000	39,726,000	39,726,000	39,726,000	119,178,000
		6층~9층	4	52,280,650	317,302,140	31,730,210	401,313,000	40,131,300	40,131,300	40,131,300	40,131,300	40,131,300	40,131,300	40,131,300	120,393,900
		10층~14층	5	52,808,800	320,507,500	32,050,700	405,367,000	40,536,700	40,536,700	40,536,700	40,536,700	40,536,700	40,536,700	40,536,700	121,610,100
		15층 이상	15	53,389,700	324,033,000	32,403,300	409,826,000	40,982,600	40,982,600	40,982,600	40,982,600	40,982,600	40,982,600	40,982,600	122,947,800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은 66A, 84A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 66B, 66C, 84B, 84C, 110A, 110B 타입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무이자 적용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8.02.0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 부과 예정입니다.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대상자		66A	66B	66C	84A	84B	84C	110A	110B	합계
일반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관추천자 등		14	3	3	19	5	6	-	-	50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자녀수가 3명 이상인		14	3	3	20	5	5	3	3	56
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신고일 5년 이내며 자녀가 있는 자(태아도 가능)	우선공급 75%	21	5	5	29	9	9	-	-	75
		일반공급 25%	7	1	1	9	2	2	-	-	25
		계	28	6	6	38	11	11	-	-	10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연속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등본기준)		4	1	1	6	1	1	1	1	16
합계			60	13	13	83	22	23	4	4	22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본 산출결과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정하였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청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당첨 동호수 결정	•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4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 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1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경과 시 2순위 해당)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 방문접수(견본주택)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부적격 처리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발표하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 (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50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밀양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밀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시 밀양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공급 신청자 중 선정된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및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6)「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 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되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8)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 연맹·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9)「중소 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10)「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11)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장애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밀양시) 거주자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추천기관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② 장애인 :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③ 중소기업 근로자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10% 이내) : 56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밀양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인 밀양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	-	-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서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저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제 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주택량의 20% 이내) : 100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밀양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밀양시)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밀양시)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산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기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14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6,665,980원	6,226,343원 ~7,471,610원	6,938,355원 ~8,326,025원	7,594,084원	8,249,813원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7,221,478원	7,471,611원 ~8,094,245원	8,326,026원 ~9,019,860원	9,112,901원 ~9,987,308원	9,899,775원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 (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❶주택공급신청자, ❷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❸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❹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전원의 수를 의미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	① 견본주택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주택량의 3% 이내) : 16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밀양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만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인터넷 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제외) * 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모집공고일 기준 국외 거주시 국외 거주기간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세대원 전원 제출대상 *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의 경우 본인만 제출대상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 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는 생략

다자녀 가구		O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으로 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O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본인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의 혼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신혼부부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 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비사업자의 경우)
노부모 부양	O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O		주민등록증	대리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구분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밀양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밀양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밀양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지역(밀양시)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1순위 및 2순위 모두 적용하여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4)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통장효력이 상실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밀양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순위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85㎡ 초과	추첨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타입	추첨제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밀양시, 경상남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1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2017년 9월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1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 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밀양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 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 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최저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이상 노인(또는 노약자) ·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구분	1층(최저층)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당첨자 중 1층(최저층) 희망자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③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신청방법	· 특별공급 : 희망자는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을 기재하여야 함. · 일반공급 :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 신청시 1층 우선배정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시간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2020. 08. 04. (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 10:00~14:00)	인터넷청약(청약Home)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일반공급	1순위	2020. 08. 05. (수)		인터넷 신청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0. 08. 06. (목)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노부모 신혼부부, 다자녀	• 일시 : 2020.08.12.(수) • 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게재(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일시 : 2020.08.12.(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가능	• 일시 : 2020.08.25.(화)~2020.08.27.(목) (3일간 10:00~16:00) • 장소 :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견본주택 (밀양시 내이동 1175-5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12 (수) ~ 2020.08.21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12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밀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밀양시에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밀양시 제외),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밀양시 제외)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현장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주택에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 청약 시 유주택자에 해당되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서류 제출

구 분	제 출 기 간	제 출 장 소	제 출 방 법
당첨자	- 2020.08.13.(목)~2020.08.19.(수)	- 당사 경본주택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75-5번지)	당 사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비입주자	- 당사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 통해 안내 예정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관람은 불가 합니다. (서류 미 접수시 계약포기로 간주됨)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계약시 지참)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계약시 지참)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90일 초과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90일 초과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출입국사실확인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명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확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일반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계약시 지침)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청약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계약시 지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2. 수도권 외 6개월
3.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Ⅶ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 약 기 간	장 소	비 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8.25.(화) ~ 2020.08.27.(목)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75-5번지)	-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견본주택 관람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자에게 통보되는 별도기간동안 진행 될 예정입니다. (공급계약일 관람불가)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됨.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계약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 합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 계약금 입금증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좌	중소기업은행	414-098088-01-051	㈜한국토지신탁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8동 1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81301홍길동)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무이자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 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시 중도금 무이자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표준사업약정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무이자이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단, 사업 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조정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추택)을 세대당 2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무이자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등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

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및 복리시설
• 경비실(1개소), 경로당(1개소), 주민공동시설[독서실1개소(남/여 구분 각1개실), 주민회의실 1개소 등],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1개소, 골프클럽(연습타석)], 어린이집(1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실내놀이터 1개소
※ 부대 및 복리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상기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Ⅷ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및 시스템 에어컨, 플러스 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타입	확장위치	확장금액(VAT포함)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66A	거실,주방/식당,드레스룸,침실1,침실2,침실3	7,800,000	780,000	7,020,000
66B	거실,주방/식당,드레스룸,침실1,침실2,침실3	8,000,000	800,000	7,200,000
66C	거실,주방/식당,침실1,침실2,침실3	7,500,000	750,000	6,750,000
84A	거실,주방/식당,드레스룸,침실1,침실2,침실3	9,000,000	900,000	8,100,000
84B	거실,주방/식당,드레스룸,침실1,침실2,침실3	9,200,000	920,000	8,280,000
84C	거실,주방/식당,침실1,침실2,침실3	8,700,000	870,000	7,830,000
110A	거실,주방/식당,드레스룸,침실1,침실2,침실3	10,000,000	1,000,000	9,000,000
110B	거실,주방/식당,알파룸,침실1,침실2,침실3	10,500,000	1,050,000	9,450,000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중소기업은행	414-098088-01-051	(주)한국토지신탁

■ 발코니 확장시 무상선택사항

주택형	선택	옵션	비고
110A	ALT-1	주방펜트리+현관 대형창고	택1
	ALT-2	알파룸+붙박이장	
110B	ALT-1	현관창고+드레스룸	택1
	ALT-2	현관 대형창고	

• 66A, 66B, 84A, 84B 침실3 붙박이장 / 66C, 84C 침실3 시스템가구 / 110A, 110B 침실2,3 붙박이장은 무상으로 제공됨
• 전세대 침실1 드레스룸은 무상으로 제공됨

■ 발코니 확장시공에 대한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 선택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등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현상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확장되지 아니한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므로 수전 등 급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등 관련 제세공과금 신고를 해야함.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받을 수 없으며, 추가 선택품목(옵션) 선택이 불가능함.
- 견본주택 세대 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음.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발코니확장 선택 계약 시 공정 진행 등의 사유로 해약 취소 불가함.)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도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정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 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 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발코니비확장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등의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비확장에 따른 세부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 카달로그보다 다소 두꺼워질수 있음.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이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시공사 대림산업㈜가 주관하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 후 계약진행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대수	설치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비고
66A, 66B, 66C	ALT-1	2대	거실+침실1	LG, 삼성	3,250,000	택1
	ALT-2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150,000	
84A, 84B, 84C	ALT-1	2대	거실+침실1	LG, 삼성	3,400,000	택1
	ALT-2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00,000	
110A	ALT-1	3대	거실+주방+침실1	LG, 삼성	5,280,000	택1
	ALT-2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90,000	
110A(알파룸 선택시)	ALT-3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990,000	
110B	ALT-1	3대	거실+주방+침실1	LG, 삼성	5,280,000	택1
	ALT-2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90,000	
	ALT-3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990,000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실별, 가전사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시 별도로 세부안내 예정임 / 삼성은 무풍에어컨으로 제공함
- 110A 알파룸 선택 후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해당타입 시스템에어컨은 ALT-1, ALT-2만 선택가능 / ALT-3 선택불가함
- 홈네트워크 연결기능포함 / 공기청정형 에어컨은 미판매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전주택형	LG	CLADING BIS냉장고 홈바형 (S711S124B)	5,750,000	택1
			CLADING BIS냉장고 디스펜서형 (S691S134BS2)	7,650,000	
		삼성	CLADING TBI냉장고 일반형 (BRS665040SR)	5,400,000	
			CLADING TBI냉장고 디스펜서형 (BRS655140SR)	7,100,000	
비스포크 셋트	84A	삼성	1도어 냉장고 (RR39T7695AP)+ 1도어 변온냉장고 (RZ24T5660AP) + 1도어 김치냉장고(RQ32R7645AP)	4,800,000	택1
	66A,66B,66C 84B,84C,110A (알파룸 선택시)		1도어 냉장고 (RR39T7695AP)+ 1도어 변온냉장고 (RZ24T5660AP) + 1도어 김치냉장고(RQ32R7645AP) + 펜트리장	5,700,000	택1
빌트인 김치냉장고	84A	LG	LG 김치냉장고 (K221PR14BL/R)	1,250,000	택1
		삼성	삼성 김치냉장고 (RQ22K5(L/R)01EC)	1,250,000	
	66A, 66B, 66C 84B,84C,110A, 110B	LG	삼성 김치냉장고 (RQ22K5(L/R)01EC) + 펜트리장	1,750,000	택1
		삼성	LG 김치냉장고 (K221PR14BL/R) + 펜트리장	1,750,000	
전기오븐	전주택형	LG	광파오븐 MZ385EBT	400,000	택1
		삼성	전기오븐 HSB-N361B	400,000	
		SK매직	스팀오븐 (EONB401SA)	650,000	
		SK매직	IOT 스팀오븐 (EONB440SA)	1,040,000	
식기세척기	전주택형	삼성	삼성 DW50R4055B (8인용)	550,000	택1
		SK매직	SK매직 DWA2628B (9인용)	500,000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전주택형	SK매직	가스1구 + 인덕션2구 (GRA-BI320H))	850,000	택1
			인덕션2구+ 하이라이트1구 (ERA-BT030)	800,000	
			SK매직 인덕션 3구 (IHRBF311)	1,250,000	

◎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선택	구성내용	공급금액	비고
현관 중문	전주택형	ALT-1	3연동슬라이딩 (금속프레임 / 8T 브론즈 투명)	1,600,000	택1
		ALT-2	3연동슬라이딩 (금속프레임 / 8T 망입패턴)	1,700,000	

◎ 붙박이 가구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
주방수납가구	84A	주방 대형수납장	1,300,000	택1
	110A(알파룸 선택시), 110B		1,200,000	
작은방 붙박이장	66A, 66B, 66C	침실2 작은방 붙박이장	750,000	택1
	84A, 84B, 84C		850,000	택1
드레스룸	110A (알파룸 선택시)	알파룸 드레스룸 특화 (시스템가구 설치)	400,000	택1

◎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신청할 수 없음.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안방(침실1)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서, 근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하이브리드쿡탑 및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 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함.
- 붙박이가구 선택 시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현관입구는 기본설계대로 시공 마감됨.
- 주방가구 옵션 및 붙박이가구 옵션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안대로 시공됨.
- 주방 대형펜트리장 미선택시 110A(알파룸 선택형)와 110B의 경우 키큰장이 설치되며, 84A의 경우는 키큰장이 설치되지 않음
- 추가선택 품목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시 제조사 보증 책임에 따라 처리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 및 발코니 미확장세대는 추가선택품목을 계약할 수 없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 설치하는 품목으로서 상품구성,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없음

◎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재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03-987726	대림산업㈜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고, 문의사항은 시공사 또는 분양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창호, 바닥재, 벽, 천장, 조명기구, 욕실기구, 주방가구 등)에서 계약자가 직접 일괄 신청시 해당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 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기본선택품목 세대 동·호수 우선 배정하지 않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경첩, 하드웨어 일체, 문선) PL창호 (터닝도어 포함)등	목재문 가틀 (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L창호 (시트지 제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현관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바닥 마감 등	발코니 확장전 바닥 난방, 시멘트 몰탈 (난방 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 방수, 우수 선홈통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현관 전신경 및 패널마감 (해당 주택형), 신발장, 현관 수납장(해당 주택형), 화장대, 붙박이장, 발코니 선반류, 경량 벽체등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 스위치
천장	천장지 (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 전동빨래건조대 등	천장면 석고보드, 커튼 박스, 발코니 천장면 견출 마감, 스피커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포함), 욕실매입등	배선기구류(MDF, 타일등 마감 미처리부위 제외)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 벽), 뒷선반, 위생기구 (양변기, 세면기, 욕조, 수전, 샤워기 등), 샤워부스, 코너선반, 욕실 악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욕실스피커폰 및 비데(부부욕실) 등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 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배기덕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러시 포함), 벽타일, 설비 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음식물 탈수기, 주방액정 TV등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현관 신발장, 복도장, 장식장, 시스템장, 거울, 드레스룸장, 화장대, 안방 드레스룸, 욕실장, 붙박이장,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창고 및 드레스실, 알파룸 내부 시스템가구, 벽체 이음, 벽체+천정 이음부의 실리콘 마감	설비배관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별도)

구분(주거전용면적)	66A	66B	66C	84A	84B	84C	110A	110B
금 액	21,350,000	21,350,000	21,300,000	27,077,000	27,090,000	27,040,000	35,190,000	35,22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 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3조를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마감재 제외)과 가변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 할 경우 입주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시공범위가 당초 발코니 비확장(기본형)세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되어 타자재의 시공과 시공범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 천장에는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바탕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배선, 배관, 기구류 위치 등은 발코니 비확장(기본형)세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 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 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IX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1.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할 예정)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 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입주지정 개시일 1~2개월 이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배 공사, 도장 공사, 가구 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3.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반 유의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지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진입로 등 도로여건, 인근 건물 신축계획, 소음, 악취,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할 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아파트의 현장 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 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등이 입주 전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함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따름.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각종 인쇄물 및 모형도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공기준은 최종 건축(변경)허가 도서를 기준으로 함.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의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이미지 컷 및 CG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황 또는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등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상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석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단지모형도,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이해하시기 바람.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제작과정의 표현상 한계로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는 도시계획도로 개통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외부디자인계획 등은 인허가관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개발주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영상 촬영물, 카탈로그, 각종 광고홍보물 등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것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외부 보안등. 옥탑 경관조명, 공용설비(영구 배수 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설치하며, 그 외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 열림방향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동측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서측 우사위치로 악취,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인지하여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인근 수로와 구거가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악취, 해출발생, 통행의 불편함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 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발방향과 규모는 당 사업지와 무관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CG,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음. 아울러, 밀양시의 해당부위 개발방향에 따라 옹벽시공, 성토 및 방음벽 등으로 인한 단지고저가 변경될 수 있음

설계 관련 공통 유의 사항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단지모형 및 홍보를 위한 CG, 카탈로그상의 단지 내부 및 주변도로는 준공 시 달라 질 수 있음. • 단지의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에 따라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관개선 등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보안등, 옥탑 경관조명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홈네트워크 설비, 승강기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외부 보안등, 옥탑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운동시설(외부), 쓰레기분리수거장,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 간, 세대 간, 실 간 소음전달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일조권, 조망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주출입구, 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야간 조명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부대 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창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각 동 주변에 노출되거나 세대와 인접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단지 진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등의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 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단지배치도 및 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각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으나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 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주차장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놀이터, 운동시설(외부), 보행로 도로 등)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바닥마감재의 패턴, 컬러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본동과 주민공동시설 외벽 컬러 및 시공 디테일 등은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단지경계로 생울타리, 철제난간이 설치될 수 있음(적용 디자인 미정) • 단지 경계부 식재는 CG 및 모형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도로의 폭, 단차, 레벨 등은 모형과 일부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 야외 운동시설, 놀이터 등에 적용되는 기구의 개수, 컬러, 구성은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공시 사용자의 편의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제공되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보관소의 적용디자인은 현장여건과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 • 104동 4호의 1층 필로티는 폐쇄형으로 입주자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제공되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보관소의 적용디자인은 미정으로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벽면에 설치된 사인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빛 공해로 인한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른 단지 내 문주 설치 시 101동 저층세대는 조망,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된 주민운동시설(외부)의 구성 및 제공기구의 종류,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101동, 104동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104동은 램프진출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부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경우 차량 회차 시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저층 석재 마감이 적용됨. •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 • 주동 최상부의 외부 마감 컬러 및 시공 디테일 등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 • 승강기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는 최하층 2개층과 최상층 2개층이 개폐가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 되는 창호는 1개 층마다 1개소씩 개폐가 가능함. 다만, 소방법령・심의결과에 따라서 개폐가 제한・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 일부에 선홈통이 설치되 수 있음. •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용 조명, 위성 및 공청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중계설비(101동, 103동)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 진동 및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승강기 출입문과 세대 현관문이 마주하고 있는 101동 3호, 5호 / 102동 3호, 4호 / 103동 2호, 5호 / 104동 1호, 3호 세대 등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어린이 놀이터1, 유아놀이터(101동 ~ 102동 사이 공간 설치예정) 및 커뮤니티 마당, 어린이놀이터2(103동~104동 사이 공간 설치예정) 설치 예정으로 놀이시설물과 포장의 종류 및 디자인은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 진행 될 수 있음.(조경 공간의 추가 구성으로 보행동선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보행동선은 공간 형태의 변경 등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 • 101동 104동 저층부세대의 경우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 근처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집수 및 배출 설비가 경비실 하부에 설치되며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101동 옥탑 상부에 오수집수정 배기구가 설치되며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의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불편을 받을 수 있으며, 발전기실 DA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세대 및 공용에서 전기료가 발생함. •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시설물 작동시 소음, 매연,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내 CCTV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 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 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설치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복도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동별・세대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지정주차구획 관리운영은 관리주체 책무임. •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단위 세대 마감재 등	■ 단위세대 마감재 등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 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 높이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거실, 침실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손잡이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층에 따라 배관수량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청소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변경요청 및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세대 내부 가구 및 빌트인 제품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바닥, 벽체, 천정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방범용 동체 감지기는 지상1,2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주변에 승강기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분양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승강기 홀 인접 세대에서는 승강기 운행 등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의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및 실시공시에는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보일러 등 각종 배수, 배관, 설비들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과 발코니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거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발코니 출입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발코니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관련 법규 변경에 의해 침실벽에 노출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아울러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세대 배선기기, 급수분배기함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조명, 등기구는 실제 시공시점 차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외단열로 시공되는 일부동의 일부 외벽마감 재질 및 색감 등이 주변 다른 동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적용되는 주동 외벽 저층부 몰딩의 규격 및 컬러 등은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타일의 간격, 무늬, 컬러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구의 적용 하드웨어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발코니, 화장실, 현관의 단차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배수구의 노출(입상관, 선홈통),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세대 월패드의 제공 프로그램, 기능은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욕실부위 바닥난방은 샤워부스, 욕조하부는 제외됨.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전기기의 경우 생산업체의 사정에 의한 해당모델 단종 및 일부제품 수급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품 공급이 제한될 시. 동급, 동가 이상의 모델, 브랜드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침실 크기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는 계약세대 실측을 통한 가구, 가전기기 배치계획을 가지기 바람. • 견본주택 내 전시된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 등은 전시품목이고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경우 일부 부위 전시품목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해당부위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외부창호 및 실외기 그릴, 안전난간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도어 사이즈로 인해 입주자가 가지고 계신 세탁기, 건조기 사양에 따라 주방발코니 내 수납이 어려울 수 있음. 반드시 해당세대 실측 후 전자제품 구매계획을 잡으시기 바람. • 주방의 가스배관, 차단기, 밸브 등이 노출설치 됨 • 세대내 세탁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있음 • 견본주택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고/김치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 고객님이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밥통, 청소기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 및 수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아울러 세탁기 및 건조기 직렬설치시 주택형에 따라 해당부위 세탁실 선반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인조대리석류(현관 디딤판 및 걸레받이, 씽크대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음매가 발생됨.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최하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우물천정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료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며,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의 타일류는 줄눈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타입 단위세대내 벽패널 마감부위의 경우 본 공사시 패널 나누기 형태 및 디테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있음 • 비확장세대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일부세대 확장제공)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욕실도어 및 확장시 보조주방 발코니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됨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시 설치되는 침실 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음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과 현관 디딤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합문 제외)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접합부위에 단열재 설치 위치에 따른 발코니 유효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구조검토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기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별도의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발코니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인접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66A, 66B, 66C,84A, 84B, 84C, 110A, 110B 타입의 침실2,3의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조적 또는 건식고정 벽체입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는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단위세대의 경우 비확장 발코니(실외기실 제외)에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며, 이에 따라 PVC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실외기실에 화재 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있음 •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위치가 층별로 상이하며, 이로 인한 설치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해당부위 수납공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고, 세대 내 설비배관 및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및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서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고, 수납에 장애가 발생함. • 세대내 설치된 선홈통(우·배수관), 배수구, 수전(세면기, 샤워기, 주방, 세탁기, 손빨래수전 등), 세면기, 샤워부스, 욕조, 변기 등은 실제 시공시 위치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됨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텐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주방의 식탁 조명등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설치됨. • 단위세대 주방 천정조명은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조명은 식탁설치위치를 감안하여 설계·시공되며 견본주택과 다르게 위치 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 세대내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져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 보일러는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보일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보일러 작동 시 발코니벽과 면한 실내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이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7인승 속도 120m/min의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특성상 운행시 다소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6대 설치됨 • 각 동 지하에 무인택배보관함 1개소씩 설치예정이며, 총 세대수의 약 15% 수준임 • 전 타입의 실외기실의 그릴 위치가 실외기 효율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소유한 가전기기 사양, 용량에 따라 수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돌출되어 생활 상 불편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설치되는 렌지후드 상부장의 경우 수납이 어려울 수 있음 • 주방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 내 일부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분양건축물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시행위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단지 여건	• 단지 내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수분양자이며, 준공 후 임의변경 불가함. • 기부채납하는 도로 등은 착공 후 협의과정 중 도로 선형, 포장재, 담장, 세부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지자체의 도시계획도로 변경 계획 진행여부 등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동측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및 횡단보도의 위치, 단지 주변 도로 선형, 소공원 레벨,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밀양시와 체결할 예정이나,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다른 세대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계획, 놀이터기구 등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건물 내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임.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1, 유아놀이터(101동~102동 사이 공간 설치예정) 및 커뮤니티 마당, 어린이놀이터2(103동~104동 사이 공간 설치예정)의 설치는 놀이시설물과 포장의 종류 및 디자인은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음.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적용되는 주차차단기의 경우 사용검사 시 인허가청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방향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가스정압기가 주동 근처에 노출되어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되어 단지모형 및 CG등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동측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서측 밀양시에서 25m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으로 개설 시 옹벽, 성토, 방음벽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설계 관련 유의 사항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높이차로 인한 일부 구간에 단지 내 옹벽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되어 있음.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 주차장은 지상1층, 지하1층에 설치되고 각 동별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배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차량의진출입 동선 및 주차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단지 내 주차장의 설계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각 동에 따라 차량의 진출입 동선, 거주자의 주차장 접근 동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세대의 경우 이동 동선 등으로 인해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 있으니, 해당 동·호수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아파트 지상1층 전, 후면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 및 소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와 인접한 101동, 102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세대 위치와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주차장과 오수배출시설 단독설치, 지상1층에 승강기, 자전거보관소, 지하1층 ~ 29층에 승강기가 설치됩니다. • 복리시설은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실내스크린골프장(1타석),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스터디룸(주민회의실겸용), 작은 도서관(실내놀이터포함), 어린이집, 경로당, 맘스스테이션, 온실카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영구배수시설 설치로 인한 하(우)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의 부담주체는 입주민임.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가스 정압시설 및 전기 변압대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수 있으며, 위치는 현장여건의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시설물의 위치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104동 남동측 방향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빛공해,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배면에는 옥외주차장, 101동 2호 라인 전면에는 통학차량 정차장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남동측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빛공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1층 세대 진입동선이 계단실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 동 출입구에 주차공간이 구획될 수 있어 입주자 동선간섭 및 동 출입구 시인성 저하가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 주택 유의 사항	• 계약세대가 속한 세대의 입지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주차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및 품질 및 디자인 향상 등의 목적으로 동질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할 수 있음.(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및 보관함)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투시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은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연출용으로 시공된 부분은 전시용품목과 연관된 각종 배관, 배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건축허가(변경) 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설치 세대 내 설치된 전시용품, 전시조명, 스프링클러 등은 실제 시공시와 상의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차장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됨 • 견본주택은 66A, 84A Type이 설치될 예정이며 66B, 66C, 84B, 84C, 110A 및 110B 타입은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모형, 분양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I 기타사항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적용여부	기 준
고기밀 창호(외기직접)	적용	KS F22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1등급 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가정용보일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전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KS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따른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를 각 1개소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현관 입구 측면에 1개소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사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 설치

■ 감리사 및 감리계약 금액

구분	감리사	감리계약 (부가가치세 포함)	주소
건 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606,968,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59
전 기	㈜영광기술단	421,273,500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B동, 1414호
통신, 소방	동양종합엔지니어링㈜	508,2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45

■ 주택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0-101-0007200호	₩112,169,962,8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탁사	㈜한결애	131111-04657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디동 516호(구미동, 시그마2오피스텔)
수탁사(사업주체)	㈜한국토지신탁	110111-1258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시공사	대림산업㈜	110111-00849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 분양 홈페이지 : https://www.elife.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75-5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주택전시관

■ 분양 문의 : ☎055-355-333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서울-080010호
- 영업소 소재지 : ㈜한국토지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번호 :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 예정일
 - 착공 : 2020년 06월
 - 준공(예정) : 2022년 09월

- 공급 예정일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 국·공유지 제외 대지소유권 100% 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지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자체관리
- 토지거래허가 구역 여부 등 법령상 규제사항 없음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분양대행사 : ㈜더비엠피 (현장상황 및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 본 주택은「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한결애와 "수탁자" ㈜ 한국토지신탁이 2020년 4월 21일자로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사업"은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되거나, 또는 "본 사업" 분양대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분양계약자(매수인, 분양권을 승계받은 자 포함)"에게로 이전된 경우(신탁의 일부 종료) "수탁자(매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분양계약자(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